

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

발의자 : 이영아 의원

발의일 : 2021. 11.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항목 및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
- 나. 복지카드 사용, 수익처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제정 규칙안은
「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○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